



[시행 2017. 5. 30] [보건복지부령 제497호, 2017. 5. 30, 타법개정]

보건복지부 (장애인자립기반과) 044-202-3322, 3325

- 1 () 이 규칙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2 () 공공기관의 장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(이하 “우선구매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통하여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3 (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(이하 “생산시설”이라 한다)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1.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
 2. 생산설비 현황
 3.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
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·관리·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4 ()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.
-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5. 30.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
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 - 나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
 - 다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
 2. 근로자 명부 1부
 3. 근로자 임금대장 1부
 4.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
- 5 ()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.
-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.
-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.
- 6 () 법 제18조제3항에서 “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”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.

<제497호, 2017. 5. 30.>(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)

1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

11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

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

⑫ 생략

12 생략